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4. 9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4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(2009. 4. 9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건설관리과장 김 영 하

가. 개정이유

도로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 점용자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점용물의 정비 및 사후관리 전문법인(단체)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개정 내용

1) 구청장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철거전문 업체 또는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.

2)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: 신 승 관)

○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, 조례로써 노점상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바, 동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“서울특별시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”가 제정되면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조례와 연계된 개별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, 현재 시급한 노점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은 노점상 관리에 관한 개별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조문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